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05,588,598	18,167,658
일반회계	599,847,647	17,995,429
특별회계	5,740,951	172,229
기타특별회계	5,740,951	172,229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400,212	102,006
주택사업특별회계	13,000	390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011,925	30,358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50,100	1,503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135,850	34,076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29,864	3,896

제 2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